

1. 개정 이유

- “제작인증 소음도 연계제도” 도입(‘22.12.30)에 따른 이륜자동차 인증시험의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방법 등을 정하고,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작·운행 이륜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작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 및 표시방법 명시(규칙안 제34조의4)
 - (표시항목) “인증시험 결과 값” 외에 “원동기 최고회전속도”를 표시
 - (표시방법) 차체 또는 차대에 표지판을 이용하여 표시하되 영구적으로 고정
- 소음정보전산망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9조)
 - 자동차제작자는 소음인증 정보와 연계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대번호, 제원관리번호 제공
- 제작·운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개선(안 별표13 제1호마목, 제2호라목)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 개선(안)>

구 분		현행		개정안	
		제작차	운행차	제작차	운행차
배기 소음 (dB)	총배기량 175cc 초과	105	105	95	95
	총배기량 175cc 이하 80cc 초과			88	88
	총배기량 80cc 이하	102		86	86

- 조문 현행화 등 법체계 정립
 - 현재의 고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작 이륜자동차 가속주행 소음허용 기준(EU기준)을 상위법(시행규칙) 명시로 법체계 정립(안 별표13 제1호마목)

자동차 종류 \ 소음 항목			가속주행소음(dB(A))	
			가	나
이륜 자동차	총배기량 175cc 초과	PMR>50	77 이하	77 이하
		25<PMR≤50	74 이하	74 이하
		PMR≤25	73 이하	73 이하
	총배기량 175cc 이하·80cc 초과	PMR>50	77 이하	77 이하
		25<PMR≤50	74 이하	74 이하
		PMR≤25	73 이하	73 이하
	총배기량 80cc 이하	PMR>50	77 이하	77 이하
		25<PMR≤50	74 이하	74 이하
		PMR≤25	73 이하	73 이하

- 이륜자동차 측정방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실효성·통일성 확보(안 별표15)
- 현재 폐지된 국제표준(KSC-1502) 조문을 현행화하고, 이륜자동차 뒷바퀴 지지대를 조건부 설비로 명확화하여 검사의 안정성 확보(안 별표1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4(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해당 인
증·변경인증의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배기소음 시험결과 값
2. 목표 원동기의 회전속도(배기소음 시험할 때 운전하는 원동기 최고
회전속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는 해당 이륜자동차의 차체(자동차의 외면을 형
성하고 있는 몸체를 말한다) 또는 차대(차체를 받치며 바퀴에 연결되
어 있는 철로 만든 테를 말한다)에 누구나 잘 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해야 한다.

제39조를 제38조의2로 하고,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자동차 소음·진동 정보관리 전산망 구축·운영 등) ① 한국환경
공단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소음·진동 정보관리 전산
망(이하 “소음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에 통합하여 구축·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정보전산망으로 수집·관리되는 자동차의 소음

• 진동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생산·관리되는 자료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에 따른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에 관한 전산시스템에서 생산·관리되는 자료

③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소음인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차대번호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원관리번호

④ 제1항에 따른 소음정보전산망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3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소음 항목 자동차 종류			가속주행소음(dB(A))		배기소음 (dB(A))	경적소음 (dB(C))
			가	나		
경자동차	가		74 이하	75 이하	100 이하	110 이하
	나		76 이하	77 이하		
승용 자동차	소형		74 이하	75 이하	100 이하	110 이하
	중형		76 이하	77 이하		
	중대형		77 이하	78 이하	100 이하	112 이하
	대형	원동기출력 195마력 이하	78 이하	78 이하	103 이하	
		원동기출력	80 이하	80 이하	105 이하	

		195마력 초과				
화물 자동차	소형		76 이하	77 이하	100 이하	110 이하
	중형		77 이하	78 이하		
	대형	원동기출력 97.5마력 이하	77 이하	77 이하	103 이하	112 이하
		원동기출력 97.5마력 초과 195마력 이하	78 이하	78 이하	103 이하	
		원동기출력 195마력 초과	80 이하	80 이하	105 이하	
이륜 자동차	총배기량 175cc 초과	PMR>50	77 이하	77 이하	95 이하	110 이하
		25<PMR≤50	74 이하	74 이하		
		PMR≤25	73 이하	73 이하		
	총배기량 175cc 이하 · 80cc 초과	PMR>50	77 이하	77 이하	88 이하	
		25<PMR≤50	74 이하	74 이하		
		PMR≤25	73 이하	73 이하		
	총배기량 80cc 이하	PMR>50	77 이하	77 이하	86 이하	
		25<PMR≤50	74 이하	74 이하		
		PMR≤25	73 이하	73 이하		

비고

- 경자동차 중 “가”는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에 적용하고, “나”는 그 밖의 자동차에 적용한다.
- 가속주행소음의 “나”는 직접분사식(DI) 디젤원동기를 장착한 자동차에 적용하고, “가”는 그 밖의 자동차에 적용한다.
- 차량 총중량 2톤 이상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오프로드(off-road)형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중, 원동기 출력 195마력 미만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표의 가속주행소음기준에 1dB(A)를 가산하여 적용하며, 원동기출력 195마력 이상인 자동

차에 대하여는 위 표의 가속주행소음기준에 2dB(A)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4. PMR(Power to Mass Ratio, 중량대 출력비)은 자동차의 공차상태(자동차에 사람이 승차하지 않고 물품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서 연료·냉각수 및 윤활유를 만재하고 예비타이어(예비타이어를 장착한 자동차만 해당한다)를 설치하여 운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중량에 75kg을 더한 자동차 중량(kg)을 최대출력(kW)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5.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라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3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소음 항목 자동차 종류		배기소음(dB(A))	경적소음(dB(C))
경 자동차		100 이하	110 이하
승용 자동차	소형	100 이하	110 이하
	중형	100 이하	110 이하
	중대형	100 이하	112 이하
	대형	105 이하	112 이하
화물 자동차	소형	100 이하	110 이하
	중형	100 이하	110 이하
	대형	105 이하	112 이하
이륜 자동차	총배기량 175cc 초과	95 이하	110 이하
	총배기량 175cc 이하·80cc	88 이하	
	초과		
	총배기량 80cc	86 이하	

	이하		
--	----	--	--

비고 :

1.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허용기준은 “위 표의 배기소음 기준”과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배기소음 인증·변경인증 받은 결과 값에 5데시벨(dB(A))을 더한 기준” 중 더욱 엄격한 기준을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으로 적용한다.
2.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다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5 제2호 중 배기소음측정의 검사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배기소음측정	- 자동차의 변속장치를 중립 또는 주차 위치로 하고 정지가동상태(Idle)에서 가속페달을 밟아 가속되는 시점부터 원동기의 최고출력시의 75% 회전속도에 4초 이내 도달하고 그 상태를 1초이상 유지시킨 후 가속페달을 놓고 정지가동상태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최대소음도를 측정한다. 그리고 정지가동상태(Idle)로 10초 이상 둔다. 이와 같은 과정을 2회이상 반복한다. 다만, 원동기 회전속도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배기소음을 측정할 때에는 정지가동상태에서 원동기 최고회전속도로 배기소음을 측정한다. - 이 경우 중량자동차는 5dB, 중량자동차
----------	---

	외의 자동차는 7dB을 측정치에서 뺀 값을 최종 측정치로 하며, 승용자동차 중 원동기가 차제 후면에 장착된 자동차는 배기소음측정치에서 8dB을 뺀 값을 최종 측정치로 한다.
--	---

별표 15 중 “참고”를 “비고”로 하고, 비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 표에서 정한 운행차소음 측정방법 및 기준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별표 16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장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한 보통소음계 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소음계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나. 이륜자동차 후륜 지지대(뒷바퀴를 지면에서 들어 올릴 수 있는 장치) 1조 이상 (단, 중립 기어가 없는 구조이면서 뒷바퀴를 지면에서 들어 올릴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를 검사하려는 경우에 한함) 다. 그 밖에 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한 보통소음계 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소음계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나. 이륜자동차 후륜 지지대(뒷바퀴를 지면에서 들어 올릴 수 있는 장치) 1조 이상 (단, 중립 기어가 없는 구조이면서 뒷바퀴를 지면에서 들어 올릴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를 검사하려는 경우에 한함) 다. 그 밖에 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4조의4(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해당 인증·변경인증의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배기소음 시험결과 값</u> <u>2. 목표 원동기의 회전속도(배기소음 시험할 때 운전하는 원동기 최고회전속도를 말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표시는 해당 이륜자동차의 차체(자동차의 외면을 형성하고 있는 몸체를 말한다) 또는 차대(차체를 받치며 바퀴에 연결되어 있는 철로 만든 테를 말한다)에 누구나 잘 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해야 한다.</u>
<u><신 설></u>	<u>제39조(자동차 소음·진동 정보관리 전산망 구축·운영 등) ①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33조의2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소음·진</u>

동 정보관리 전산망(이하 “소음 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에 통합하여 구축·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정보전산망으로 수집·관리되는 자동차의 소음·진동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생산·관리되는 자료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에 따른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에 관한 전산시스템에서 생산·관리되는 자료

③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33조의 2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소음인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차대번호

<u>제39조</u> (생 략)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u>제39조제2항에 따른 제원관리 번호</u> ④ <u>제1항에 따른 소음정보전산 망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u> <u>제38조의2</u> (현행 제39조와 같음)
--------------------------	---